

예산총칙

201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2,337,000	15,670,110
일반회계	487,400,000	14,622,000
특별회계	34,937,000	1,048,110
기타특별회계	34,937,000	1,048,110
수질개선특별회계	6,202,000	186,0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72,000	71,16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620,000	18,6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58,000	52,7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50,000	7,5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545,000	106,350
치수사업특별회계	19,540,000	586,200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0	1,5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600,000	18,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68,92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